

1. 5-06-0600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-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변경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 (안)					비 고
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(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					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(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					
여신거래신청서(기업용) (포괄한도용)					여신거래신청서(기업용) (포괄한도용)					
(생 약)					(좌 동)					
포괄한도거래약정서(기업용)					포괄한도거래약정서(기업용)					
본인은 ~ (이하생략)					본인은 ~ (이하생략)					
제1조 거래조건					제1조 거래조건					
① 본인과 은행은 포괄여신한도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. 다만, 본인의 여신신청은 각 여신과목별 한도내의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여신종별한도(포괄한도_____및 포괄한도_____) 및 총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합니다. 다만, 외화여신과 원화여신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화여신의 원화 환산율은 매 직전일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					① 본인과 은행은 포괄여신한도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. 다만, 본인의 여신신청은 각 여신과목별 한도내의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여신종별한도(포괄한도_____및 포괄한도_____) 및 총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합니다. 다만, 외화여신과 원화여신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화여신의 원화 환산율은 매 직전일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					
총 한 도		금 ()			총 한 도		금 ()			
여신종별한도 (포괄한도_____)		금 ()			여신종별한도 (포괄한도_____)		금 ()			
여신과목	여신과목	금 액	이자율	지연배상금율	여신과목	여신과목	금 액	이자율	지연배상금율	

별 한도	금		자연배상금률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. 단, 최고자연배상금률은 연 %로 합니다. 연체가간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 연체가간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 연체가간이 ()개월 초과인 경우 : 연 %	
	금			
	금			
여신종별한도(포괄 한도)		금	()	
여신 과목 별 한도	여신과목	금 액	이자율	자연배상금률
		금		자연배상금률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. 단, 최고자연배상금률은 연 %로 합니다. 연체가간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 연체가간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 연체가간이 ()개월 초과인 경우 : 연 %
		금		

② ~ ④

(생 략)

제3조 이자율의 변동

(생 략)

제4조 중도상환수수료

별 한도	금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%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)+()%	자연배상금률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. 단, 최고자연배상금률은 연 %로 합니다. 연체가간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 연체가간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 연체가간이 ()개월 초과인 경우 : 연 %	
	금	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	
	금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%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)+()%		
여신종별한도(포괄 한도)	금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%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)+()%	자연배상금률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. 단, 최고자연배상금률은 연 %로 합니다. 연체가간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 연체가간이 ()개월 초과인 경우 : 연 %	
	금	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	
	금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%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)+()%		
여신 과목 별 한도	여신과목	금 액	이자율	자연배상금률	
		금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%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)+()%	자연배상금률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. 단, 최고자연배상금률은 연 %로 합니다. 연체가간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 연체가간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 연체가간이 ()개월 초과인 경우 : 연 %
		금	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
	금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%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)+()%		

② ~ ④

(좌 등)

제3조 이자율의 변동

(좌 등)

제4조 중도상환수수료

이자율 기재방법
을 구체적으로 구
분하여 표시

<p>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<u>대출금 또는 한도거래 여신의 약정한도를 약정기일(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, 이하 같음)전에 상환 또는 해지할 때에는</u>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 <p><u>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{기본수수료율 연 ()% + 시장금리차이 수수료율 연 (~)%} x 대출잔여기간 ÷ 365(외화대출은 360)</u></p>	<p>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<u>대출금을 약정한 대출기일(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, 이하 같음)전에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</u>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으로 하며, 최초 대출일로부터()년(기한연장 포함)까지 적용합니다.</u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중도상환수수료율은()%로 적용합니다.</u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기타 ()</u></p>	<p>한도거래여신 관련내용 삭제</p> <p>-중도상환수수료 산식 변경</p>
<p>② 「<u>시장금리 차이 수수료율</u>」은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약정일(또는 연장일, 대환일, 분할실행일), 시장금리연동 대출은 최근 금리변동주기 응당일의 기간별 시장지표 금리(CD, 금융채, 국고채, LIBOR등) 유통수익률에서 <u>대출기일전(분할상환대출은 분할상환 기일전) 상환일의 전일자 기간별 시장지표금리 유통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적용합니다.</u></p> <p>③ <u>대출잔여기간은 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(기한연장한 경우 연장한 대출기일 포함)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경우 365(외화대출은 360)로 합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>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.</p> <p>1. 원화대출의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</p> <p>2. 외화대출을 타 통화(원화 포함)로 대환하는 경우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삭 제)</p> <p>② <u>대출잔여일수 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.</u></p> <p>1. 「<u>대출잔여일수</u>」는 상환방법에 상관없이 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,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(최초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)를 차감하여 구합니다.</p> <p>2. 「<u>대출기간</u>」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, 3년이 초과하더라도 3년(일수)으로 정합니다.</p> <p>3. <u>중도상환수수료는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(기한연장 포함)이내로 적용합니다.</u></p> <p>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.</p> <p>1. <u>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</u></p> <p>2. <u>외화대출을 타 통화(원화 포함)로 대환하는 경우</u></p>	

<p>3.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한 기일전 상환의 경우</p> <p>4. 예금담보대출(은행의 예금, 적금, 부금, 금전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여 전액 은행이 정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합니다)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</p> <p>5. 정책자금대출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</p> <p>6. 기한이익 상실, 상계, 기업 구조조정 업무(Work-Out) 등으로 은행이 대출을 기일전 회수하는 경우</p> <p>제5조 ~ 제16조</p> <p>(생 략)</p> <p>추가약정서(기업용) (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)</p> <p>(생 략)</p> <p>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</p> <p>(생 략)</p> <p>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)</p> <p>(생 략)</p>	<p>3.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한 기일전 상환의 경우</p> <p>4. 예금담보대출(은행의 예금, 적금, 부금, 금전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여 전액 은행이 정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합니다)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</p> <p>5. 정책자금대출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</p> <p>6. 기한이익 상실, 상계, 기업 구조조정 업무(Work-Out) 등으로 은행이 대출을 기일전 회수하는 경우</p> <p>제5조 ~ 제16조</p> <p>(좌 동)</p> <p>추가약정서(기업용) (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)</p> <p>(좌 동)</p> <p>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</p> <p>(좌 동)</p> <p>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)</p> <p>(좌 동)</p>	<p>-문구수정</p>
---	---	--------------

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 (생 락)	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 (좌 동)	
---	---	--

2. 개정약관시행일 : 2012.12.17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: 시행즉시 적용

- 통합약관서에 포함되는 포괄한도거래약관서의 중도상환수수료 변경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내용이나, 본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대상상품이 아니므로 거래내용이 달라지는 점은 없으며 시행즉시 적용.